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Management System of Sexual Crime Ex-convict in Police

김상운*, 조현빈**

경찰교육원*,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Sang-Woon Kim(ksw48@naver.com)*, Hyun-Bin Jo(johyunbin@korea.com)**

요약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크게 인식되어 일반시민의 범죄 두려움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폭력범죄와 달리 암수성이 강하며, 이와 동시에 범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실태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간의 경우 2009년도에 발생한 강간범죄 중 약 62%가 범죄경력에 있는 자들로서, 범죄경력자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범죄경력자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성범죄자 예방을 위한 활동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찰의 우범자관리 및 성범죄 전력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1 담당 경찰관 운영 제도, 그리고 외국의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의 법적, 제도적,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시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서 매뉴얼 제작, 관련법 개정, 전문 경찰관교육 등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경찰 | 강간 | 성범죄 | 우범자 관리제도 | 성범죄 전력자 신상정보 등록 |

Abstract

The fear of civilians has recently increased due to sexual crimes. Unlike other crimes, sexual crimes mostly go unreported and are more likely to be repeated. The rape cases, which constitute the highest percentage of sexual crimes, represent that 62% of the sex offenders were ex-convicts in 2009.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activities to prevent sexual crimes implemented by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e's criminal management as well as 1:1 management of ex-convicts, and sexual offender management of foreign nations as the measure for sexual crimes, which cause social problems.

From these, we suggested legal, institutional and practical problems, as well as solutions such as manual production,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special police education.

■ keyword : | Police | Rape | Sexual Crime | Management of Second Offender | Sexual Crime Ex-Convict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I. 들어가며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해사건, 제주 서귀포 초등생 성폭행 살해사건, 혜진·예슬양 성폭행 살해사건,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등이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경찰의 성폭력 범죄자 관리 등 성폭력 범죄 예방 및 검거 등 경찰의 성범죄와 관련된 활동의 부족한 대응능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이러한 심각한 성범죄자에 대해 언론이나 정부, 국회, 각 기관별로 관리 및 우범가능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강력한 성범죄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성폭력 전과자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신상공개제도 보완 및 강화,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성충동 욕구자제를 억제시키기 위한 화학적 거세법안 등 성폭력 전과자 중심의 재발방지 대책이 붓물처럼 쏟아졌다. 물론 경찰 또한,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전과자 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성폭력 사건 집중수사 및 조기해결, 실종사건 대응체계 강화, 성범죄 우범지역 특별방범활동 강화 등의 종합 치안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매년 발생할 때 마다 경찰이 내놓은 소위 종합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민수심의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범죄발생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경찰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에 대해 억울한 면이 없진 않지만 경찰조직은 범죄예방 및 수사 활동이라는 치안책임 기관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비판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성범죄자 대한 경찰의 미흡한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는 미국의 “두가드 사건”과 우리나라의 “김길태 사건”의 예로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성폭력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 재범성향이 강한 것이다. 이의 방지를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적 개입이 필요하고 공공보호를 위한 사회전체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1]. 특히, 매 사건마다 경찰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는 성폭력 범죄 전반에 대한 경찰의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성범죄 전력자 관리제도 중에서도 우리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 전력자 재발방지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내·외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김길태 사건 이후 위와 같은 대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경찰내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후, 그에 따른 성범죄 전력자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성범죄자의 특징

1. 성범죄자의 의의

성범죄는 현재 형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있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며 이를 침해한 강간, 강제 추행, 강간으로 인한 살인과 상해, 간음 등을 행위 태양으로 하며 그 대상에 있어서는 부녀, 추행에 대해서는 남성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 미성년자, 13세 미만의 아동, 피구금 부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2].

성범죄의 정의는 문화권마다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물리적 폭력 및 위협을 통해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축약되어 정리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은 없지만,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성적 행위까지도 성범죄에 포함시킨다[3]. 미국의 경우 성-중립적 강간범(gender-neutral statutory)의 정의로 전환되어 동성 강간, 남성이 피해자인 여성의 성폭행과 음경-질의 삽입보다는 동의하지 않은 성적활동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4]. 따라서 성범죄자는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통칭하는 의미로서, 대부분의 경우 남성이 중심이 되는 범죄이다. 그러나 추행의 경우 여성도 가해자에 포함될 수 있다.

2. 성범죄자의 특징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재범과 관련된 공식통계자료인 경찰백서를 살펴보면, 강간범죄의 재범률은 약 67.5%이며,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7,208명 중 동일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가 83.4%에 이른다고 한다[2]. 또한 법무부 보호국 회의자료(2006)에 의하면 성범죄자의 1년 이내의 재범률은 2001년 37.5%, 2002년 38.9%, 2003년 34.9%, 2004년 33.6%, 2005년 34.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2],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사회인지이론에 의하면 성범죄자는 강간죄로 고소되어 유죄가 된 다수의 남성이 오랜기간 끊임없이 사회와 갈등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5]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은 일탈적 신념 또는 습관적 사고 및 행동 패턴을 갖도록 기대되고, 이것이 그들의 범죄를 촉진시킨다고 한다[6]. 즉, 상습적인 성범죄자의 경우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성 및 가치관이 특정한 요소들과 합치된다면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범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간범의 폭행은 대부분 공격적 특징을 강하게 가지는 특징이 있으며, 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성적활동 뿐만 아니라 도둑질과 침입절도, 동물학대, 방화, 폭력 등 다른 범죄에도 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대인관계와 사교성이 부적절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5].

는 성범죄의 특징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성범죄자 관리제도의 구분

사전 예방 제도	사후 관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의 처벌 강화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범 집중처우센터 운영 집중처우센터 운영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장치 부착 · DNA 유전자 정보 DB 구축 ·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 경찰의 우범자 관리제도

〈출처 : 최종술, 2008 : 1330, 재인용〉

2010년 발표된 범죄백서에는 2009년도 발생한 강간범죄는 총 14,329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초범인 강간범은 4,139명이었다. 전체의 약62%가 범죄경력이 있는 자들이었다. 이 중 강간범의 재범실태를 보면, 범죄경력자 중 1회~3회의 전과경력을 가진 자들이 전체의 25%, 4회~6회의 전과경력을 가진 자들이 전체의 10%, 7~8회는 4%, 9범 이상의 전과자가 9%를 차지하였다.

[표 2]의 내용과 같이 강간범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으며, 범죄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전과 9범 이상의 심각한 범죄자의 경우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표 2. 강간범의 재범 실태(2009) (단위: 명)

	전과없음	1~3범	4~6범	7~8범	9범 이상	미상
강간범	4,139	3,551	1,505	555	1,231	3,348
비율	29%	25%	10%	4%	9%	23%

〈출처 : 2010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344~355〉[7]

전체 범죄경력자 중 동종재범자는 전체 전과자 6,821명 중 1,107명으로 16%를 차지하였다. 이 중 강간범 중 재범자의 재범기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총 1,107명 중 1개월 이내 다시 강간을 저지르는 재범자는 59명으로 5%, 3개월 이내 강간을 저지르는 자는 72명으로 6%, 6개월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자는 67명으로 6%에 해당하였다. 6개월 이후 1년 이내 다시 강간을 저지르는 자

III.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제도 실태 및 외국의 사례

1. 우리나라

1.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및 관련법

1.1.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 전력자 관리 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사전 예방제도와, 사후관리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 예방제도와 사후 관리제도

들은 263명으로 24%를 차지하여 전회의 기간에 비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년 이후 2년 이내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강간범의 경우 163명으로 15%를 2년 이후 3년 이내 재범자는 152명으로 14%를, 3년이후 재범자는 331명으로 30%를 차지하였다.

표 3. 강간범죄 동종 재범자 재범기간(2009)(단위: 명)

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1,107	59	72	67	263	163	152	331
100%	5%	6%	6%	24%	15%	14%	30%

〈출처 : 2010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360~361〉[7]

이러한 내용은 강간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으며, 심각한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처벌 직후 범죄의 재범률이 감소하지만, 6개월 이후 재범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3년을 넘어서도 재범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강간범죄자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러한 관리제도의 실행을 위하여, 경찰을 중심으로 성범죄 전력자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1.1.2 성폭력범죄 관련법

성범죄자들은 재범률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신상정보등록과 관련된 법률은 첫 번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성매수의 경우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 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의 경우는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직업·직장 등의 소재지 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⑥ 사진 ⑦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로써, 위 7가지 내용이 등록정보가 되고, 위 사항에 대해 등록정보 변경여부를 경찰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요건을 살펴보면,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강도강간죄,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자로써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그 대상이다. 또한 상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직업·직장 등의 소재지 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⑥ 사진 ⑦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로, 위 7가지 사항에 대해 등록정보 변경여부를 경찰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1.2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4.15) 제정으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2011.4.16부터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즉,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성범죄자 알림e-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요지 등이고 공개기간은 3년 초과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 1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 5년, 벌금형의 경우 2년까지 공개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개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공개정보를 송부하여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예방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8. 9 이 후부터 시행 중인 위치추적 전자 감시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위 제도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감시하며,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은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보호관찰관이 현지출장, 조사, 경고 등 밀착 감독을 할 수 있다. 전자 감시제도의 경우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재범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렵고, 이들을 모두 관리 감독하는 것이 어려워 전자 감시제도 부착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통해 전자 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 4. 전자 감시장치 부착 대상 성범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로 2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형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이내에 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 부착 · 이전에 전자발찌를 찬적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를 수차례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 ·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형 집행 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기중료로 풀려난 성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을 경우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8]

또한, 성범죄자들의 성적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2011. 7.24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시되며,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성도착증 환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 전 정신과 전문의의 감경과 진단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약물치료제도의 경우 세로토닌계 약물치료가 최근 들어 외과적 거세보다 더욱 인기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세로토닌계 약물을 포함하여 안티안드로겐 약물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안티안드로겐 약물은 성적 충동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검증되었지만, 체중 증가, 피로감 증가, 두통, 우울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여 복용을 기피하기도 하여, 효과성 및 부작용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9].

1.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시행·운영 중에 있다.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신상을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범위 및 우편고지 제도 운영은 법무부가 운영중인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같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위 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등에 성범죄자를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여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경찰에서는 성범죄 경력자에 관한 관리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담당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실효성 있는 성범죄 전력자 관리 및 재범방지를 위해 실시된 제도로서 등록대상자를 담당경찰관이 1대1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는 우범자 관리제도로써, 경찰은 신상정보 제출자 중 비열람 대상자도 전담 관리를 하면서 3개월에 한 차례씩 점검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경찰이 특별히 신상정보를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1 성범죄 전력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1 담당 경찰관 운영 제도

2.1.1 추진배경 및 근거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실효성 있는 성범죄자 전과자 관리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 필요에 따라 2009. 11. 5부터 신상정보 대상자인 열람대상자와 비열람 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본격적인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었다

1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 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 활동 시설, 청소년 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 시설, 청소년 지원 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경비원 해당), 체육 시설.

[10].

2.1.2 연혁 및 관련 근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에 대한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면, 2005. 12. 29. 제7차 일부개정 법률 제7801호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음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신설 되었다. 즉 성범죄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2006. 6. 30.경부터 2008. 2. 3.경까지 성범죄를 행한 자를 대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위 법률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으로 신상정보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져, 사실상 동법 제23조 제2항 등록 대상자는 성범죄 등록대상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고, 신상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동된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동법 제27조 1항 등록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벌칙 조항이 있음에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실상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제8차 전부개정 2007. 8. 3. 법률 제8634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 동법 제35조 제3항 관할 경찰서장은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경찰에게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변경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 등록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에 의거, 현재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위 조항을 근거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자 관리와 별개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신설 되었다. 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운영, 2011. 4. 16.경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동법 제35조 제3항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 경찰에게 성범죄자의 정보 변경여부 확인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08년 2월 4일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11년 4월 16일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관리 하고 있다.

2.1.3 관리 대상자 요건 및 등록정보 내용

성범죄자는 성매매 및 성폭력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경우 경찰이 관리하게 되는데, 현재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현황은 어떠한, 어떤 요건을 갖춘 성범죄 전과자들을 관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성폭력 전과자 우범자 관리

2.2.1 추진배경

우범자 관리는 1991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찰청 자체 예규로 운영 중인 제도로서, 지속적인 아동 성폭행 사건 발생 및 서울 영등포 초동생 성폭행 피의자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우범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성폭력 전과자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 되었다[11].

2.2.2 주요 내용

위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우범자 관리는 첩보수집 대상자와 자료보관 대상으로 구분·운영 되

었지만, 추가로 중점 관리 대상자를 지정·운영 하는
우범자 등급조정이 주요 골자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1970년부터 2003년간 성폭력 전과자 중 7년 이상 장기
복역자를 우범자로 편입, 우범자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
하려고 하였다.

① 중점 관리 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
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19세 미
만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또는 2회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형
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
죄를 저지른 자로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중점 관리 대상자가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성폭
력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관내 지구대 경찰이나 경찰서
담당자가 해당 성폭력 전과자인 우범자의 최신 동향을
매월 1회 파악하여 집중 관리 및 이중 관리 하도록 되
어 있다.

② 첩보 수집 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
로 1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19세 미
만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범죄로 2회 이
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또는 1회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중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²가 첩보
수집 대상자가 된다. 이러한 첩보수집 대상자로 선정된
성폭력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관내 지구대 경찰이 해당
성폭력 전과자인 우범자에 대한 정보를 3월에 1회, 수
집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③ 자료 보관 대상자

1회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자 중 재범 위험자에 포함
되지 않으나, 폭력으로 자주 입건되는 등 폭력성향이
있는 자는 자료 보관 대상자로 편입된다.

2 재범위험성 판단기준: 1회 복역자 중 청소년·성인 대상 성폭력 전
과자를 대상, ① 성폭행 범행으로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 ②
실형을 선고 받은 자 중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 ③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나, 불구속 또는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경우, ④ 다른 죄종(폭력, 강·절도)으로 3년 이
상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경우

3. 외국

3.1 미국

미국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다.
뉴욕주는 모든 성범죄자의 온라인 ID·이메일 주소 등
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에
제공, 성범죄자 신규 회원 가입거부 및 기존 회원 삭제
를 통해 청소년 개인 홈페이지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텍사스주에서는 지역 케이블방송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90일간 주당 16회 이내로 공개하는 “존
TV”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리노이주는 성범죄
자의 거소를 지도에 표시하여 인터넷에 게재하며 소재
불명 성범죄자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유죄가 확정된 성범
죄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성범죄자임을 표
시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추진³ 중에
있으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국장은 형기 만료가 임박
한 성범죄자 중 정신과 의사·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자를 성 위험자로
지정하여 치료감호 기관에서 구금·보호 상태로 약물
·정신과·심리 치료를 실시하여 매년 1회 이상 성 위
험자 해당 여부를 재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97년 플로리다주에서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최초로 전자 감시 위치추적 장치사용
을 시행하였다. 특히, 플로리다·콜로라도·미주리·캘
리포니아주 등은 특정 성폭력 상에 대해 징역형 만기
복역 후 평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3.2 영국

영국은 2006. 4 중요조직 범죄청(SOCA) 산하에 아동
성범죄 조정 및 총괄 전담 기구인 ‘아동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터’를 설립·운영 중에 있다. 위 기구는 아동성범
죄 전담 총괄기구로써 신고접수·수사·교육·홍보 등
종합적인 활동을 수행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별도의 보
호자가 없는 16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있는 것을 금지

3 오클라호마 및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운전면허증 앞면에 “Sex
Offender”표시, 델라웨어 주에서는 “Y”문자 표기, 플로리다 주에서
는 “775,21,F,S” 등 위반법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재

하는 성범죄 예방 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학원·놀이방 등 아동 관련 시설주는 교사 등 채용 시 국가범죄 수사국을 통해 성범죄 전과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전자팔찌라고 불리는 전자 위치추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형사사법법에 의거하여 가석방의 조건 혹은 형기만조 후 최장 8년간 출입금지 명령 혹은 외출 제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키고 있다. 그리고 영국 전역의 25개 교도소에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역할극 등을 통해 범죄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복귀 능력도 함께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 훈련이 함께 진행된다.

영국은 경찰법상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아동 관련기관 등에 아동 성범죄자에 관한 기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범죄법상 아동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12].

3.3 일본

일본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 출소시 범무성에서 관련 자료를 경찰청에 통보하여 경찰은 경감급 이상 직원을 재범방지 담당관으로 지정·관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신고활성화를 위해 익명으로 범죄신고를 접수하는 익명신고 다이얼제를 시행 중에 있고, 오사카 경찰의 경우는 지역내 택배업체와 연계하여 배달중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발견시 보호 및 경찰에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카야마 경찰은 신청자에 한해 지역 내 각종 범죄정보 및 아동에게 말을 거는 수상한 사람의 자료 등 범죄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실시간 제공하는 아동보호 안심메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 5월 일본의 범무성의 교정국과 보호국은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연구회를 통해 일본 내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것을 기본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8개월로 구성하여 1-3단계로 구성되어 수용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13].

IV.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제도 문제점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제도 문제점

다음에서는 전술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및 성인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경우, 경찰은 어떠한 방법으로 성범죄 전과자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1.1 관리 방법

현재 경찰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관내 지역경찰관 1인이 등록대상자 1인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1:1 운영 중에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들 등록대상자들 중 법원에서는 열람 대상자와 비열람 대상자를 나누어 신고하며, 열람대상자는 매월 1회 신상정보 변경여부를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보고하고, 비열람 대상자는 3월 1회 신상정보 변경여부를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14].

1.2 문제점

성범죄자 관리방법을 제시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연계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강화 계획' 내용에 의하면, 주소 및 차량번호는 경찰전산조회시스템을 활용하고, 실거주지는 직접방문하여 확인하며, 직업 및 직장소재지는 유선 등을 통해 확인하되 성범죄자 등록대상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언행은 금지하라고 기술되어 있다. 주소 및 차량번호 확인을 전산시스템 조회만을 통해 성범죄자를 관리할 경우, 성범죄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을 운행치 않고 다른 차량을 운행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전산조회만으로 성범죄자의 실제 운행차량이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신고하지 않은 다른 차량을 이용해 성범죄 관련 재범을 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비난 및 책임은 전담 경찰관이 부담해야 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직업 및 직장 소재지와 관련,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직장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전화 등의 방법

으로 성범죄자를 관리하라는 지시내용은, 일선 지역담당 경찰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관할 경찰서장은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열람대상자와 비열람대상자를 구분하여 매월 1회 또는 3월 1회 간격으로 변경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규정이 미비된 상태로 있다. 즉, 경찰청 자체 공문을 통해서 관리 횟수를 지정, 운영 중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 등록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지침 방식으로는 담당 지역 경찰관들에게 성범죄자 재범방지라는 큰 책임만을 떠넘긴 채, 형식적인 관리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부 관리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2. 우범자 관리제도의 문제점

우범자 관리는 현재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과거부터 우범자 관리는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었다. 물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우범자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우범자 관리는 타 범죄 우범자와 마찬가지로 간접관찰로써, 사실상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집중관리 대상자와 직접 대면할 법적 근거가 없어 주변인 탐문, 주거지역 조사, 직장 주변 탐문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미리 탐지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논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일선 지역 경찰관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집중관리 대상자의 경우는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도 없고 경찰청 자체 공문에 근거한 새로 분류된 대상자이므로, 경찰청 예규에도 관련 근거가 없다. 첩보수집 대상자의 경우도 집중관리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비록 경찰청 예규에 규정되어 있긴 하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인권침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규칙 제6조 제3항에서는 첩보를 수집함에 있어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에 의하고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선 우범자 담당 지역 경찰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보관 대상자의 경우는 말 그대로 자료만 보관하는 것으로 사실상 어떠한 재범여부나 위험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관리방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우범자 관리는 사실상 우범자의 민원 제기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구대 및 파출소 담당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첩보수집 활동이나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에 대한 우범자 관리 제도는 자체 특성상 정보수집 활동의 일환이고, 검거의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성폭력 범죄자를 관리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V. 성범죄 전력자 관리제도의 실효적 운영 대책

1.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운영 매뉴얼 제작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우범자 관리는 법률적 근거 미비 및 검거의 목적을 위한 정보수집활동에 불과한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일선 지역경찰관들의 부담과 책임만 지을 뿐, 사실상 제대로 된 성범죄 전과자 관리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로 명확히 경찰에게 성범죄 전과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의무자 권한을 규정해 놓고 있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인 경찰의 성폭력 전과자 재범방지 대책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서장은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찰·관리가 필요

하며, 일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범죄 전력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매뉴얼)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

주소 및 차량번호는 경찰 전산조회시스템을 통한 확인과 직접 담당 경찰관이 등록된 주소지를 방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실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출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 탐문 및 주거지 방문을 통해 주차된 차량들을 파악하여, 실제로 성범죄자가 어떤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조사는 직접적인 대면조사 보다 주변 탐문조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탐문수사 중 이웃주민들에게 성범죄자 등록대상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여 인권침해 문제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위와 같은 조사행위로 성범죄 등록관리대상자로부터 민원제기를 받더라도 경찰은 연 1회 변경정보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 받은 만큼,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며, 변경 여부확인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과 관련 이에 따른 법률 판단 및 검토가 이루어진 후 일선에 하달해야 할 것이며, 이로써 일선 경찰관들이 인권침해와 같은 민원소지 위험의 부담감으로부터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성폭력 전과자 우범자 관리 법률적 근거 마련

비록 우범자 관리는 정보수집활동에 불과하여, 대인적 관리 측면의 효과성은 미미하나 대물적 관리 즉, 자료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성폭력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성폭력 전과자 우범자 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성범죄 전력자를 포함한 우범자 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며[15], 이와 더불어 경찰청 자체적으로 우범자 등급조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우범자 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전담 경찰관 대상 교육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담당 여청직원 및 1:1로

지정된 담당 지역경찰관, 성폭력 우범자 담당 형사직원 및 우범자 관리 지역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전력자들의 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방법 및 현 실태, 상호간 연계방안 등 실무 중심의 심층적인 논의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운영 매뉴얼 지침 제작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제도 운영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1:1 담당 지역경찰관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법률적 근거 및 적극적 대처,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관리내용 등의 전반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담당 경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전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휩싸이게 할 수 있는 사회적 과급효과가 큰 것이 바로 성폭력 범죄이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검증되지 않은 대책들로 이벤트성 대응전략들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존의 근시안적이고 대중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처방과[16]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기 보다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법률상 경찰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장 지역 경찰관들이 성범죄 전력자들을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 하달하여야 할 것이며,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관내 성범죄 전력자들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의 우범자 자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범자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이 법률에 명시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작업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일선의 지역경찰관들 대상으로 성범죄 전력자들의 관리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경각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 또한 필요하다.

물론, 성범죄 전력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경찰

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술한 영국의 경우처럼 중요 조직 범죄청(SOCA) 산하에 아동 성범죄 조정 및 총괄 전담 기구를 설립, 운영하여 신고 접수부터 수사, 교육, 홍보 등 종합적인 활동수행이 가능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로 시행 중인 수많은 성폭력 예방대책들과 성범죄 전력자 관리대책 등이 각각 개별로 운영 중인 바, 영국의 제도처럼 종합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종합대책기구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성범죄 전력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정책이 형식적인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윤태영, “영국 NPS의 성범죄자 전략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7권, 제2호, p.42, 2007.
 [2] 이수정, 전주희, “성범죄자의 위험유형별 처우 방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제3호, p.118, 2007.
 [3] 이수정, 고려진, “성폭력 범죄자 재범방지 치료 처우 강화 방안”, 한국범죄학, 제1권, 제1호, p.110, 2007.
 [4] S. E. Brown, F. Esbensen, G. Geis, and 황의갑, *범죄학*, 도서출판 그린, p.498, 2011.
 [5] C. Bartol and A. Bartol, 장석현·이창한 譯, *범죄심리학*, 청목출판사, p.388, 2010.
 [6] 조윤오, 이미정, “한국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위반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4권, 제2호, p.25, 2010.
 [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pp.344-355, pp.360-361, 2010.
 [8]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HP/MOJ03/index.do?strOrgGbnCd=100000>
 [9] 이수정, 김경옥,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제3호, p.97, 2005.

[10] 경찰청, “성범죄자 신상정보 연계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강화 계획”, 2009.
 [11] 경찰청, “성폭력 전과자 등 우범자 관리강화 계획”, 2010.
 [12] 김은주, “소아기호성 성범죄자의 특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제1호, p.130, 2007.
 [13] 류여해,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47호, pp.157-158, 2010.
 [14] 경찰청, “성범죄자 신상정보 연계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강화 계획”, 2009.
 [15] 이성용, “강력범죄를 위한 경찰활동의 쟁점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6호, p.192, 2009.
 [16] 이상훈,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9호, p.223, 2010.

저 자 소 개

김 상 운(Sang-Woon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행정학사)
- 2008년 8월 : 계명대학교 정책학과(행정석사)
- 2011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현재 : 경찰교육원 교무계장
 <관심분야> : 경찰교육, 경찰인사, 조직관리

조 현 빈(Hyun-Bin Jo)

정회원



- 1999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행정학사)
- 2001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석사)
- 2004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범죄, 위기관리, 경찰조직, 경찰인사